

5.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

-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3조 별표 1 개정(2008. 10. 31) 및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4조제1항 별표2 개정(2008.11.6)에 따라 소유 대수가 1대인 용달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 및 개인택시운송사업자의 차고지 설치의무를 면제하려는 것으로
- 동 조례 제정으로 생계형 영세운송사업자의 경제적 부담경감과 생활안정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되나 고성군 관내 차고지 설치의무가 면제되는 운송사업자는 어느 정도인지에 대하여 설명이 요구됩니다.

6. 질의 및 답변 요지

- 문 : 조례 제정으로 인해 혜택을 보는 개인택시 및 용달화물자동차 현황은?
- 답 : 개인택시 96대, 개인용달 30대입니다.
- 문 : 일반회사 영업용 택시에 대한 혜택 방안은 없는지?
- 답 : 법적인 근거가 없습니다.

7. 토 론 : 없음

8. 심사결과 :

- 2010. 3. 31 출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